



## 2010 FIFA 월드컵 남아프리카공화국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서 광 옥 (남아프리카공화국 변호사/ 한국법제연구원 외국법제조사위원)

### I. 2010년 월드컵 특별조치법의 제정 배경

2004년 5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이라 칭함)은 세계 축구연맹(이하 ‘FIFA’ 라 칭함)에서 주최한 개최지 선정입찰에서 2010년 아프리카 대륙 내의 최초 개최국으로 선정이 되었다. 이로써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축구대회는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역사적 행사로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단체 및 기업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남아공에서 FIFA 아프리카 연맹 축구대회(Confederations Cup)가 개최된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축구대회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제정된 법률로는 첫째, 2010년 FIFA 월드컵 남아프리카공화국 특별조치법

(2010 FIFA World Cup South Africa Special Measures Act)<sup>1)</sup>, 둘째, 2010년 FIFA 월드컵 남아프리카공화국 두 번째 특별조치법(Second 2010 FIFA World Cup South Africa Special Measures Act)<sup>2)</sup> 등이 있다. 두 법률 모두 국회를 통과한 후 2006년 9월 1일에 대통령의 동의 서명을 받아 동년 9월 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해당 장관의 명으로 제정되는 동 법률들에 대한 시행령(Regulation)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위의 두 법률은 월드컵 개최와 관련하여 기존 법률들의 적용을 완화했는데, 예를 들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이민법(Immigration Act)에 규정된 노동비자(Work permit)나 방문비자(Visitor's visa) 등의 규정을 느슨하게 하여 FIFA 관계자나 FIFA의 상업상 파트너들(Commercial partner)의 출입국을 용이하게

1) 법령 번호 - No. 11 of 2006, 관보(Government Gazette) 제 29198호, 2006년 9월 7일자에 게재.

2) 법령 번호 - No. 12 of 2006, 관보(Government Gazette) 제 29199호, 2006년 9월 7일자에 게재.

하였다.

두 법률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특별조치법은 월드컵대회 관련시설에 대한 개념 정의와 동시시설의 출입통제, 수색 및 압수, 교통 통제 등에 대한 규정, 월드컵대회와 관련하여 비자 및 입국허가증 등에 대한 규정 등을 다루고 있으며, 두 번째 특별조치법은 주무장관으로 하여금 2010년 남아공 월드컵대회를 보호된 특정행사(Protected event)로 선포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FIFA, FIFA 스폰서와 파트너들의 지적소유권 보호를 마련하였으며, 월드컵 대회와 관련한 의료팀(medical contingent), 의약품(medicine) 및 의료 기구(medical device)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 II. 제정 목적

두 법률의 제정목적은 법률 서문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동 법률들의 목적은 FIFA와 남아공 축구연맹(South African Football Association: 이하 'SAFA' 라 칭함) 사이에 체결한 '월드컵대회 조직위원회 계약'(Organising Association Agreement)의 내용을 실행하고, 또한 남아공 정부가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FIFA에 약조한 내용들

(Guarantee)과 또한 그와 연관된 문제들을 시행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별히 서문(Preamble)에 남아공 정부는 FIFA에 보장한 약속들을 이행할 때 헌법에 명시된 2014년까지 빈곤퇴치 등의 주요 국가 개발목표를 추구해야 하며, 동시에 FIFA의 특수이익과 남아공의 국가적 이익 창출에 균형을 유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sup>3)</sup>

동 법률의 통과를 놓고 국회에서 행한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차관(Deputy Minister of Sport and Recreation)의 연설문<sup>4)</sup>에서는 동 법률들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산업장관(Minister of Trade and Industry)으로 하여금 2010 FIFA 월드컵 대회를 남아공 상품상표법(Merchandise Marks Act, 1941) 제15A조 (1)항에 해당하는 보호된 행사(Protected event)로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상품상표법 제15A조는 남아공이 2003년 크리켓 월드컵(2003 Cricket World Cup)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조항으로 과거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특정 행사를 주관할 때 불법적으로 도용되었던 공식행사 관련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산업장관으로 하여금 특정 행사를 규정 및 선언함으로써 국내법인 상품상표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였다.

3) Preamble of 2010 FIFA World Cup South Africa Special Measures Act, 2006; and Preamble of Second 2010 FIFA World Cup South Africa Special Measures Act, 2006.

4) Debate in the National Council of Provinces on 2010 FIFA World Cup South African Special Measures Bill, Mr Gert C Oosthuizen MP, 25 August 2006, Issued by Sport and Recreation Department.

둘째, 2010 남아공 월드컵대회기간 동안의 주류소비, 판매, 보급, 선전 등에 일부 제한을 두고자 함에 있다.

셋째, 공인된 외국의료과견담을 돕고, 월드컵대회를 목적으로 한 의약품, 투입이 예정된 물질(Scheduled substances), 의료기기 허가 등을 승인하기 위함에 있다.

넷째, 공인된 외국의료과견담에게 부여된 권한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함이다.

다섯째, 등록되지 않는 의약품의 판매와 2010 월드컵 대회와 관련하여 특정 의료팀들의 자원봉사자로서의 등록과 관련하여 제한 및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함에 있다.

여섯째,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장관(Minister of Sport and Recreation)으로 하여금 동 법률에 대한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Ⅲ. 주요 구성 및 내용

#### 1. 2010년 FIFA 월드컵 남아프리카공화국 특별조치법

동법은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간략한 법으로서 제1조는 개념정의, 제2조는 경기장 및 행사장소 지정, 제3조는 국가(National anthem) 및 국기에 관한 조항, 제4조는 방문자 비자, 노동허가(Work permit) 및 비즈니스 허가(Business permit)에 대한 규정, 제5조는 월드컵대회 관련지역(Designated areas), 제6조는 월드컵대회 관련시설에 대한 통제수단, 제7조는 월드컵 대회와 관련 공공도로에서의

교통 통제 지역(Traffic-free zones) 설정, 제8조는 월드컵대회 관련시설 접근 시 수색 및 압류규정, 제9조는 시행령과 관련된 조항이며 마지막으로 제10조는 동 법으로 간결한 표제(Short title)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조 (1) (b)와 관련하여 남아공과 한국은 1달 기간 동안 무비자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기간 변경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월드컵 행사기간동안 비자를 받지 않아도 한 달 동안 체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4조 (4)항은 2010년 월드컵과 관련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이나 직장에 종사하고자 노동 허가나 비즈니스 허가를 신청할 시 FIFA의 인가증, 남아공 내에서 활동내역, 체류기간 등을 이민국장(Director-General)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2. 2010년 FIFA 월드컵 남아프리카공화국 두 번째 특별조치법

동법은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는 개념정의, 제2조는 무역산업장관으로 하여금 2010년 월드컵대회를 보호된 행사로 선언할 권한을 부여, 그리고 제3조 내지 제5조는 의료팀 및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6조는 시행령에 대한 규정이며, 제7조는 법의 간결한 표제를 다루고 있다.

2006년 5월 25일 무역산업장관(Minister of Trade and Industry)은 관보를 통해 2010년 FIFA 월드컵 대회를 보호된 행사로 선언을 하였다.<sup>5)</sup> 이로 인해 2010년 FIFA 월드컵대회는 상품상표법(Merchandise Marks Act) 제15A

조의 규정을 받게 된다. 위 조항에 근거하면 2010 FIFA 월드컵이라는 단어나 이미지는 상표(Trade Mark)로 보호를 받게 되는데, 특히 공식 스폰서가 아닌 회사나 개인들은 2010, Twenty Ten과 함께 Soccer, Football, World Cup, South Africa, SA, RSA, World Cup, FIFA World Cup 등의 단어를 혼합해서 사용할 수 없고, World Cup이라는 단어와 함께 Soccer, Football, South Africa, RSA, SA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표권의 보호는 장관의 선언이 있었던 2006년 5월부터 동법 제2조에 근거하여 월드컵 대회 종료 후 6개월까지인 2010년 12월까지 적용이 된다.

상품상표법(Merchandise Marks Act)에 의해 부과되는 벌금은 각 품목당(each article) 최대 5천 랜드(R5,000: 대략 한화 70만원)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 특히 2010년 월드컵 대회 관련 문구를 옷이나 장신구 등에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 동법상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상품상표법의 제15A조에 의하여 2010년 월드컵 스폰서<sup>5)</sup>들은 독점적으로 대회 이미지 및 관련어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대회마스코트, FIFA 월드컵 트로피, 공식 기장 등을 모든 경기장과 주변 및 FIFA 출판물 등에 사용하게 된다. 상표권 침해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데, 하나는 FIFA나 2010년 월드컵 대회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름을 도용하는 경우(Association)와 또 하나는 자신의 상품을 FIFA의 허가 없이 경기장 등에 광고를 하는 경우(Intrusion) 등을 들 수 있다.<sup>7)</sup>

현재 남아공 월드컵 조직위원회 산하 지적 소유권 법률팀들에 의해 적발된 침해사례는 대략 20업체로서,<sup>8)</sup> 그 중에는 남아공이 개최지로 선정되기 3년 전에 이미 회사로 등록된 업체가 있는데, 예를 들면 'South African Dream 2010' 이 그 예이다. 무엇보다도 기존 경기장의 스폰서 기업의 경우 FIFA의 공식 파트너가 되지 않는 경우, 대회기간 동안 자신들의 상품을 광고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이밖에도 2010년 FIFA 월드컵은 스폰서를 둔 행사이므로, 남아공 상거래법(Trade Practice Act) 제9(D)조상 후원된 행사 (sponsored event)로 분류되어, FIFA와 FIFA 스폰서와 파트너들에게 상품상표법 제15A와 동일한 보호를 제공한다. 또한 FIFA, FIFA의 스폰

5) General Notice 683 of 2006 in Government Gazette number: 28877.

6)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의 공식 파트너는 아디다스, 코카콜라, 현대, 에미레이트, 소니 등 5개 업체이고, 공식 스폰서는 Budweiser의 맥주회사인 Anheuser-Busch, 맥도날드, 남아공 이동통신회사인 MTN 등 3개 회사이며, 남아공 국내 스폰서는 남아공은행인 First National Bank이다.

7) Mike Du Toit, Ambush Marketing, Bowman Gilfillan Attorneys; Garikai Matarirano, 2010 FIFA World Cup - The proverbial own goal?, www.bowman.co.za/LawArticles,

8) Page 16, The Cape Argus (Newspaper), Feb 24, 2007.

서나 파트너들에게는 관습법(Common law) 상 모방(Passing off)으로 인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광고와 관련하여 월드컵 행사 기간 중에 남아공의 표준 광고위원회(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ASA)의 광고지침서(Code of Advertising Practice)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두 번째로, 동법에서는 월드컵 대회와 관련된 의료팀,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의료팀의 경우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산하의 의약품조정위원회(Medicines Control Council)에 의해 승인을 받은 의약품과 신고한 양만큼의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제3조). 또한 의사, 약사, 간호사로 현지에 등록하지 않고도 월드컵 기간 동안 외국 의료팀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4조와 제5조가 이를 보장하고 있다.

#### IV. 입법에 대한 평가

위의 법률들은 월드컵 대회를 치루기 위해 기본적으로 FIFA에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사항들에 대한 법률로서 국회에서 예외적으로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거나 보다 광범위한 입법을 통해 남아공 대회조직위원

회(2010 FIFA World Cup Local Organising Committee)의 운영 및 자금관리, 월드컵과 관련된 특수 수익 사업, 예를 들면, 복권발행이나 기념주화, 우편 발행을 통한 수익 등에 관한 부분들은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대회기간 중 경기장 안전 및 시설 보안, 안전대책기구 마련, 관객이나 여행객들의 안전문제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두 개의 특별조치법의 입법안에 명시되어 있던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대회기간 동안의 경기장 및 관련시설 내에서의 주류 소비, 판매, 보급, 선전 등에 일부 제한에 대한 규정이 생략이 되는 등 추가 입법이 예상된다.

그러나 세금과 관련하여 남아공정부가 FIFA에 보장한 관세면제와 기타 세금면제<sup>9)</sup>에 대해서는 입법이 추진 중이다. 세금관련법 개정 법률안(Revenue Laws Amendment Bill)은 기존의 수입세법(Income Tax Act, 1962), 관세 및 물품세법(Customs and Excise Act, 1964), 부가가치세법(Value-Added Tax Act, 1991) 및 2004년 세금관련개정법 (Revenue Laws Amendment Act, 2004)을 월드컵대회와 관련하여 개정한다. 동 입법안에 따르면 2010년 월드컵 대회기간동안 제한적으로 특정구역, 예를 들어, 월드컵 대회 관련 시설 내에서의 면세혜택, 월드컵 관련하여 FIFA 및 회원국들이 물품을 들여올 때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sup>10)</sup>

9) Government Guarantees No.3 and No. 4.

10) 자세한 내용은 Second batch of draft Revenue Laws Bill 2006과 Supplementary Explanatory Memorandum to the Revenue Laws Amendment Bill, 2006 참조(웹사이트: [www.sars.gov.za](http://www.sars.gov.za)).

## V. 시사점

한국 업체로서 FIFA의 공식 파트너나 스폰서가 아닌 경우 2010년 남아공 월드컵과 관련하여 지적소유권, 특히 상표권(Trade Mark)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남아공에서 해당 회사의 상표나 브랜드를 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남아공에서의 상표권(Trade Mark) 등록은 최소 3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한국의 브랜드로서 월드컵기간 동안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일찍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

또한 월드컵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사업허가와 관련하여 위의 특별조치법의 이민법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특히 FIFA나 FIFA의 공식 스폰서나 파트너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하는 않도록 관련 지침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남아공은 현재 흑인민주정부가 들어선 후 14년 동안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지 않고, 기존의 백인정부시절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개보수 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급증한 도시유입인구, 아프리카인근국가에서의 이민, 흑인중산층의 증대 등으로 교통체증 및 주택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월드컵 경기장 신축, 뿐만 아니라 철도증설, 요하네스버그와 프리토리아, 요하네스버그와 더반 사이의 고속철 신축, 도로 확장, 공항 및 항만 시설 확장 등의 사회전반에 걸친 인프라를 재구축해야 할 실정에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함께 위에서 기술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월드컵 관련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방송 및 전광판 등과 관련된 IT 산업과 인프라구축에 직접 참여하는 건설 분야,<sup>11)</sup> 철도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1) 건설과 관련하여 남아공 진출을 위해서 사전 시장조사 및 건설관련 법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